

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안 건 명

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
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9월 3일(수)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

2014년 9월 10일(수)

4. 폐지근거

가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0조(과태료의 부과)

나.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지 시행지침 폐지 ('08.5.13)

5. 검토의견

0 1회용품 사용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규정되어 있고,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(2008.5.13.) 되었으며,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